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5. 28 선고 2015가단572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우리컨설팅

피고A

변론 종결2015. 5. 14.

판결 선고2015. 5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안은진

별지